

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.

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

- 인테리어 공사 **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**하세요.
 - 1,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**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

무등록업자
시공시

계약불이행

공사지연 등

부실시공

하자발생

-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**계약불이행, 하자발생**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

전문건설업
등록업자 시공시

계약이행, 공기 내 완성, 적정시공, 하자보증 등 사후책임 담보

-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/하자보증 등을 법적으로 담보*하여 적정시공을 보장합니다.
 - *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,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.

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

(PC로 확인하는 방법)

[www.kiscon.net] 접속 → '건설업체 정보조회' 메뉴 에서 확인

(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)

[구글 플레이스토어] 접속 → '키스콘'으로 앱 검색

→ 'KISCON' 앱 설치 및 실행 → '건설업체 파인더'에서 확인

무등록업자가 1,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
형사처벌 대상*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*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
